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528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은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8조의2(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 작성),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19년도 말 조 성 액 (a)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 말 조 성 액 (d=a+b-c)	용 자 금 미화수차권 (e)	총 규 모 (f=d+e)
		조 성 계 획 (b)	집 행 계 획 (c)			
남북교육교류 협력 기 금	-	1,000,000	353,600	646,400	-	646,400

※ 집행(사용)계획은 남북관계,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III. 검토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9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동 조례 제14조가 정한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을 신설·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붙임1을 통해 ①기금운용총칙과 ②자금운용계획을 기재하고 있고, ①기금운용총칙에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기금 조성·운용 주요내용, 자산 관련 주요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②자금운용계획에는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등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됨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년도에 10억원을 조성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3억 5,400만원을 지출계획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여 지출계획중 사용계획을 제외한 금년도말 조성액은 6억 4,600만원으로 운용계획한 바,

〈표 3-1〉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19년도 말 조성액 ①	'20년도 조성계획		'20년도 말 조성액 ④=①+②-③
	조성계획 ②	사용계획 ③	
-	1,000	354	646

- **수입계획**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10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중 북한체험학습추진(1억원), 남북교육교류사업(2억원) 등의 사업내역에 3억 5,4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나머지 여유재원 6억 4,600만원을 예치금으로 지출계획한 것임

〈표 3-2〉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수입과목		'20년 수입액 (A)	'19년 수입액 (B)	증 감 (A-B)
장	관	항	목	
		합 계	1,000	0
		내부거래	1,000	0
		전입금	1,000	0
		전입금	1,000	0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00	0

〈표 3-3〉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정 책	단 위	세 부	지출계획	'20년 지출액 (A)	'19년 지출액 (B)	증 감 (A-B)
				사업내역			
				합 계	1,000	0	1,000
				유아 및 초중등교육	1,000	0	1,000
				교수-학습활동지원	1,000	0	1,000
				학생생활지도	1,000	0	1,000
				학생생활지도지원	1,000	0	1,000
				1.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000	0	1,000
				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354	0	354
				북 한 체 험 학 습 추 진	100	0	100
				위 원 회 참 석 수 당	3	0	3
				업 무 추 진 비	1	0	1
				남북교육교류국외여비	50	0	50
				남 북 교 육 교 류 사 업	200	0	200
				나. 예 치 금	646	0	646

1. 예치금까지 고유사업에 포함시켜 기금운용부서의 편의가 우선된 지출계획 : 지출계획중 재무활동(예치금) 신설 필요

-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은 재무활동에 해당되는 예치금까지 단 1개의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에 포함시켜 운용계획한 바,
 -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지출항목이 단 1개의 정책사업내에 편성되어 있어 회계연도중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편의가 극대화될 수 있으나

- 현행 관련 법령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정한 것은 기금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기금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료됨
- 특히, 예치금은 여유재원을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지출항목이라는 점에서 개별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울시의 경우에도 16개 기금 22개 계정을 운용하며 예치금을 고유사업과 동일한 정책 사업에 포함시켜 편성·운용하는 사례가 없음
- 기금의 지출항목중 예치금을 고유사업과 동일한 정책사업에 편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편성사례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지출항목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보다 행정편의가 우선시된 편성사례로 사료되어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지출계획중 별도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예치금)이 신설되어야 것으로 판단됨

2. 조례상 수입처리 할 수 없는 수입항목 편성

: 조례상 기금재원을 출연금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전출금으로 편성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기금의 재원을 ①출연금, ②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③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수입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기금의 재원(출연금 등)과 실제 편성한 재원(전출금)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검토됨
- 조례에 명시된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예산과목으로 전출금보다 사전절차가 엄격한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에 포함시킨 것은 기금운용부서가 전출금과 출연금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금**이 아닌 **전입금**이나 **기금전출금**으로 조례상 기금재원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기금운용부서 등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입계획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이른바 ‘수입항목 불일치 편성 사례’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대로 의결할 경우, 조례를 위반하는 편성 사례를 승인하게 되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기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기금운용계획

- 관련 법령에는 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 총괄부서는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난 5월 25일 제출된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제출일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된 것이나
- 지출계획(10억원)중 잉여재원을 예치하는 비중이 64.6%, 6억 4,6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시급히 고유사업의 적극적인 지출이 계획된 것으로 사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킨 이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